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9. 1. 21

제안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2009. 1. 21 제14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채재선의원 외 6인의 동의로 발의되어 상정·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신청사 이전과 함께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의회 구현 및 효율적인 회의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IT기반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전자투표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2005.8.4 법률 제7664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규칙에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본회의 중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되 투표기관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방법과 명확한 용어의 구분이 요구됨에 따라 제41조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수정

다. 회의록에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함.

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71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5. 개정조례(안) : 별첨

6.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7.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투표”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고,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표결로 할 수 있다.”란 단서를 신설한다.

제41조의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1호 중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예산안고 결산심사”를 예산안과 결산 등 심사“로 하고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2007.11.7일부개정)	개정안
제38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8조(표결의 참가) ----- ----- -----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에 ----- -----
제4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신설>	제40조(표결방법) ①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 -----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
②, ③, ④(생략)	②, ③, ④(현행과 같음)
제41조(투표절차) ①, ②, ③, ④(생략)	제41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②, ③, ④(현행과 같음)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 -----
1. ~ 10.(생략)	1. ~ 10.(현행과 같음)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 14.(생략)	12. ~ 14.(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5장 예산안과 결산 등 심사
제64조의2 < 신 설 >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